#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48

제출연월일 : 2021. 6. 3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-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.
-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O 위원의 구성(안 제3조)
  - 구청장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
  -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
  -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
- O 회의 개최(안 제6조)
  -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소집
  -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

-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- 4.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- 5. 참고사항
  - 가. 관계법령
    - (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5조
    - (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
  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 - 다. 기타사항
    - (1) 입법예고
      - (가) 예고기간 : '21. 4. 20. ~ 5. 10.
    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  - 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   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   - (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 : 원안의결

#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운영"을 "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"를 "위원 중에서 선출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헌신적 으로 활용"을 "헌신적으로 활동"으로, "의장"을 "성별을 고려하여 의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위원중"을 "위원 중"으로, "2인이상"을 "2인 이상"으로 한다.

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,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의 제목 "의장등의 직무"를 "의장 등의 직무"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"개최"를 "개회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"간사등"을 "간사 등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	제1조(목적)
육진흥법」제5조에 따라 대구	
광역시 서구에 두는 <u>체육진흥협</u>	<u>체육진흥협</u>
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	<u>의회의 조직 운영</u>
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	제2조(기능) <u>대구광역시 서구 체</u>
의 업무를 관장한다.	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
	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
	<u>관장한다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, 부	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대구광
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	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
<u>내로 구성한다.</u>	라 한다), 대구광역시 서구체육
	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
	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	2
은 <u>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</u>	<u>위원 중에서 선출한다</u> .
<u>다</u> .	
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	3
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	
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<u>헌신적</u>	<u>헌신적</u>
<u>으로 활용</u> 할 수 있는 자 중에서	<u>으로 활동</u>
<u>의장</u> 이 위촉한다. 이 경우 <u>위원</u>	<u>성별을 고려하여 의장</u>

중에서 체육 전문직인사 2인이 --. --- 위원 중----- 2인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.

략)

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 회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 설>

제7조(간사등) ① ~ ④ (생 략) 제7조(간사 등) ① ~ ④ (현행과

상 -----.

제5조(의장등의 직무) ①・② (생 제5조(의장 등의 직무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-- 개회-----

----. 다만,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같음)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80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</u>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## 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4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